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제8호 2019. 3. 15(금)

선 람	기관의 장

규칙

- 남원시 규칙 제632호 남원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 1
- 남원시 규칙 제633호 남원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 2

고시

- 남원시 고시 제2019-32호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 9
- 남원시 고시 제2019-33호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10
- 남원시 고시 제2019-34호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부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 11

공고

- 남원시 공고 제2019-490호 남원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입법예고 ----- 14
- 남원시 공고 제2019-501호 남원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사업 토지에 대한 출입,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 19
- 남원시 공고 제2019-515호 남원시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24
- 남원시 공고 제2019-529호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전 열람공고 ----- 35
- 남원시 공고 제2019-550호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한 토지 출입의 공고 ----- 37

회 람										
----------------	--	--	--	--	--	--	--	--	--	--

남원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남원시 용역과제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9년 03월 15일

남원시 규칙 제 632 호

남원시 용역과제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남원시 용역과제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남원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9년 03월 15일

남원시 규칙 제 633 호

남원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경기준 및 범위) ① 과징금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감경기준 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제3조(감경 제외대상)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같은 사람이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최초 위반 일 부터 연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

2. 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

제4조(감경신청 및 절차) ① 과징금을 감경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감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 1항에 따라 감경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실여부 확인 등을 거쳐 감경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과징금 감경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과징금 감경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감경사항 관리) 시장은 과징금 감경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 시행 이전 법 위반행위로 적발되어 처분되었거나 처분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별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기준

위 반 행 위	과징금 금액	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을		
		50% 감경	30% 감경	20% 감경
1.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 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 제조업자 1,000만원, ·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 판매 등 금액이 1만원 미만	· 판매 등 금액이 1만원 이상 ~ 3만원 미만	· 판매 등 금액이 3만원 이상 ~ 5만원 미만
2.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 22조를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 매체물 수량이 10개 미만	· 매체물 수량이 10개 이상 ~ 30개 미만	· 매체물 수량이 30개 이상 ~ 50개 미만
3.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 2조제4호 가목 1)의 주류 또는 같은 목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 주류판매자 100만원, · 담배판매자 100만원	· 판매액이 1만원 미만	· 판매액이 1만원 이상 ~ 3만원 미만	· 판매액이 3만원 이상 ~ 10만원 미만
4.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	· 판매액이 1만원 미만	· 판매액이 1만원 이상 ~ 3만원 미만	· 판매액이 3만원 이상 ~ 10만원 미만
5.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 고용기간이 10일 미만	· 고용기간이 10일 이상 ~ 1개월 미만	·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6.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나목 1)·2)·4)·5)·6)·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 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	· 고용기간이 10일 미만	· 고용기간이 10일 이상 ~ 1개월 미만	·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위 반 행 위	과징금 금액	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을		

		50% 감경	30% 감경	20% 감경
7.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출입 인원이 3인 미만	·출입 인원이 3인 이상 ~ 7인 미만	·출입 인원이 7인 이상 ~ 10인 미만
8.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기소유예·선고 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	-
9.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남녀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기소유예·선고 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	-
10.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기소유예·선고 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	-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소		영업장소	
	업소명		전화번호	
적발 일시			행정처분일자	
감경 사유				

「남원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결정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업소명 (소재지)			
	위반일자		위반내용	
감경처분	감경사유			
	감경내용	당초부과액 : 감경부과액 : 감 경 사 유 :		

「남원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경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금후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남원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3조에 따라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3호서식]

남원시 고시 제2019 - 32호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 시행 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19년 03월 08일

남 원 시 장

- 1. 사 업 명 : 개간사업
- 2. 사업목적 : 미간지를 농지로 조성하여 소득증대 기여
- 3. 사 업 비 : 자력사업
- 4. 사업내용
 - 가. 위 치 : 남원시 사매면 관풍리 산65번지
 - 나. 사 업 량 : 4,959m²
 - 다. 사업기간 : 2019. 03. 30. ~ 2020. 03. 31.
 - 라. 사업시행자 : 남원시 사매면 **, ***-***, 한 * *
-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농정과 농업시설(620-638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고시 제2019-33호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 시행 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19년 03월 15일

남 원 시 장

- 1. 사 업 명 : 개간사업
- 2. 사업목적 : 미간지를 농지로 조성하여 소득증대 기여
- 3. 사 업 비 : 자력사업
- 4. 사업내용
 - 가. 위 치 : 남원시 사매면 대신리 산122번지
 - 나. 사 업 량 : 4,955m²
 - 다. 사업기간 : 2019. 03. 30. ~ 2020. 03. 31.
 - 라. 사업시행자 : 남원시 가방뜰길 **, ***-***, 김 * *
-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농정과 농업시설(620-638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고시 제2019-34호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부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전라북도 남원시 월락동, 고죽동 일원에 추진하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예정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5일

남 원 시 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가. 제한지역 : 남원시 월락동 200번지 일원(남원의료원 일원)

나. 제한면적 : 51,707㎡

다. 제한사유

-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토지수용해야 할 부지에 대해 개발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사업추진 원활 및 사유재산 보호
- 설립 예상부지에 투기성 개발행위자의 난립 방지 및 개발행위허가 시 건 축물·공작물 등을 단기간 사용 후 철거해야하는 주민 피해 예방 필요

라.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일로부터 3년간

(단,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만료일 이전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완료 될 경우 만료일까지로 함)

마. 제한대상 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행위
 - 건축물의 건축 (신축, 증축, 개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의 채취
 - 토지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제외)
 - 1개월 이상의 물건의 적치
 - 기타 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시행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

2.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 및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관계도서를 남원시청 도시과(063-620-6457) 및 기획실(063-620-609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 보입니다.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토지조서는 남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편입토지조서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 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 고
	시	동	지 번				성 명	주 소	
총 계			27필지		53,981	51,707			
1	남원	월락	198 -1	전	949	949	김*순	요*로 18*3(월락동)	
2	남원	월락	198 -2	전	985	985	김*엽	낙*안길 3*-14(월락동)	
3	남원	월락	198 -3	대	940	940	정주**사문공과중중	층*로 3*8(월락동)	
4	남원	월락	198 -5	대	527	527	정주**사문공과중중	층*로 3*8(월락동)	
5	남원	월락	198 -6	대	2,334	2,334	정주**사문공과중중	층*로 3*8(월락동)	
6	남원	월락	198 -7	임	5	5	정주**사문공과중중	층*로 3*8(월락동)	
7	남원	월락	198 -8	대	2,019	2,019	정주**사문공과중중	이*면 과*리 4*8	
8	남원	월락	199 -1	전	1,431	1,431	김*순	낙**길 3*(월락동)	
9	남원	월락	199 -2	전	1,607	1,607	최*경	경기도 평택시 전*면 간**길 28, 가동 *06호(경원아파트)	
10	남원	월락	200	답	1,845	1,845	박*식	낙*길 1*(월락동)	
11	남원	월락	201	답	1,524	1,524	김*용	월*동 1*0	
12	남원	월락	202	전	1,799	1,799	이*동	인**3길 1*-1	
13	남원	월락	203	전	343	343	한*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로 913, 1*1동 50*호(문암동 문암아파트)	
14	남원	월락	204	전	1,388	1,388	이*윤	월*길 5*-4(월락동)	
15	남원	월락	205 -1	전	826	826	박*식	낙*길 1*(월락동)	
16	남원	월락	623	도	609	599	국토교통부	-	
17	남원	월락	산13 -4	임	25	25	학교법인**학원	낙*길 17*-4(월락동)	
18	남원	월락	산25	묘	9,591	9,591	남원시	-	
19	남원	월락	산26	임	11,503	11,503	정주**사문공과중중	층*로 3*8(월락동)	
20	남원	월락	산27 -2	임	5,864	5,864	정주**사문공과중중	층*로 3*8(월락동)	
21	남원	월락	산27 -3	도	2,304	40	국토교통부	-	
22	남원	고죽	162	전	280	280	임*호	월*동 2*3	
23	남원	고죽	162 -4	잡	1,842	1,842	백*섭	금**1길 8-6, 10*동 2**호(금동 금동아파트)	
24	남원	고죽	162 -5	대	1,917	1,917	유한회사**	층*로 3*8(고죽동)	
25	남원	고죽	162 -6	대	1,072	1,072	백*섭	용*로 2*7, 10*동 1**7호(도룡동 부영아파트)	
26	남원	고죽	163	대	191	191	유*라	층*로 3*0(고죽동)	
27	남원	고죽	164	대	261	261	유*라	층*로 3*0(고죽동)	

남원시 공고 제2019 - 490호

남원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입법예고

「남원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2조 및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7일

남 원 시 장

1. 폐지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던 조항이 대통령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적 위임 근거가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남원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3. 입법예고기간 : 2019. 03. 07. ~ 2019. 03. 27. (20일간)

4.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3월 27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안전재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남원시 시청로 60(도통동 518) 남원시청 안전재난과
 -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20-6746) 및 직접방문 등

5.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안전재난과(☎063-620-69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 남원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남원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9. 02.
 제출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재난과장

1. 폐지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던 조항이 대통령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적 위임근거가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남원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9. 3. 7. ~ 2019. 3. 27. (20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남원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p>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9년 월 일</p> <p>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p> <p>남원시장 귀하</p>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공고 제 2019 - 501호

남원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토지에 대한 출입,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남원시에서 시행하는 『남원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에 편입(예정)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의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제10조(출입의 통지),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및 제21조(의견청취 등) 규정에 의거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한 토지출입, 손실보상계획, 사업인정에 대한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에는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서(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14일

남 원 시 장

1. 사업 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가. 성 명 : 남원시장
- 나. 주 소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공업용수도
- 나. 사 업 명 : 남원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사업
- 다. 사 업 량 : 상수도관로 15.7km, 배수지 설치 2,000m³
- 라. 사업기간 : 2018. 6. ~ 2020. 12.

3. 사업예정지

가. 위 치 : 전북 남원시 덕과면 신양리 891번지 일원

4.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이의신청) 기간 : 2019. 3. 14. ~ 2019. 3. 28.(15일간)

나. 열람장소

1) 남원시청 기업지원과 산단관리담당(☎063-620-6653, 6654)

2) 남원시 덕과면사무소 주민생활담당(☎063-620-3982)

다.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

라. 의견제출 : 사업 및 토지조서 관련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자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 [이의신청서 열람장소 비치]

5 보상대상

가. 보상대상 : 「남원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나. 토지조서 : 별지 참조(소유자 개별 통보)

※ 세부 내역은 남원시청 기업지원과 및 덕과면사무소에서 열람 가능하며, 남원시 홈페이지(<http://www.namwon.go.kr> ⇒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함

6 보상시기 및 보상방법 : 2019. 3월중 보상협의 예정

현금 일시불 지급(계좌입금)

7.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15일간) → 보상협의요청서 통지

→ 보상협의 및 계약체결 → 보상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8 기타사항

가. 조서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 등의 확인을 거쳐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변경 또는 제외 될 수 있습니다.

나. 보상계획은 보상시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에 관한 구비서류 및 보상금 내역은 개별 통지합니다.

다. 본 공고와 별도로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대하여는 개별

통지할 예정이나 주소나 거소불명, 송달불능 등으로 인하여 개별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송달을 대신합니다.

라. 본 공고 이후에 식재하는 수목, 설치하는 지장물 및 영농행위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되고, 공사시행 과정에 추가로 발생하는 물건 등은 개별 통지함으로써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기업지원과 산단관리담당(☎063-620-6654)로 문의 바랍니다.

보 시

편 입 토 지 조 서

남원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연번	행정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지분	성명 또는 명칭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분할전	분할후		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또는 명칭		
1	남원시 목과면 신양리	891	891-2	답	2,897	75	1/3	이*재	서울시 송파구 석환동			
2	남원시 목과면 신양리	892	892-2	답	2,906	171	1/3	진주소씨***종중	남원시 목과면 신양리			
3	남원시 목과면 신양리	892	892-3	답	2,906	15	1/3	진주소씨***종중	남원시 목과면 신양리			
4	남원시 목과면 신양리	893	893-1	답	2,668	584	1/3	김*순	남원시 목과면 신양리			
5	남원시 목과면 신양리	904	904-1	답	1,650	51	1/3	이*환 이*연	전북 남원시 용성동 221번2 전북 진주시 목진구 양동4길 남원시 목과면 신양리	광주이씨***종중	전북 남원시 목과면 신양리190	근저당권
6	남원시 목과면 신양리	905	905-1	답	2,891	502	1/3	진주소씨***종중	남원시 목과면 신양리			
7	남원시 목과면 신양리	913	913-1	답	2,332	294	1/3	임*수	전북 남원시보절면 개신1길	충남기반공사 남원농업협동조합	의왕시 포일동 487 전라북도 남원시 충정로100(향교동)	근저당권 근저당권
8	남원시 목과면 신양리	921	921-1	답	2,654	362	1/3	식영최씨경원공파**종중	남원시 죽향동	한국전력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구분지상권
9	남원시 목과면 신양리	925	925-1	답	1,719	18	1/3	김*관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한국전력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구분지상권
10	남원시 목과면 신양리	248	248-2	전	802	40	1/3	조*남	남원시 목과면 서울리			
11	남원시 목과면 신양리	250	250-2	답	2,217	45	1/3	이*전	전주시 완산구 호저동1가	한국전력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구분지상권
12	남원시 목과면 신양리	251	251-2	전	552	28	1/3	이*전	전주시 완산구 호저동1가			
13	남원시 목과면 신양리	251	251-3	전	552	12	1/3	이*전	전주시 완산구 호저동1가			
14	남원시 목과면 신양리	252-2	252-5	전	513	161	1/3	주전소씨***종중	주전면 주전리			
15	남원시 목과면 신양리	신88	신88-1	임	37,808	6,767	1/3	이*백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5길	한국전력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전혁로55(빛가람동)	구분지상권
계					9,125	9,125						

남원시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9. 03.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현장지원과장

1. 제안이유

유용 미생물의 배양·공급을 통한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성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치된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규정하여 운영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의 목적, 정의, 위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조 ~ 안 제4조)
- 나.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의 운영 및 관리,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제6조)
- 다.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 생산 공급계획, 공급가격, 신청 및 공급, 공급 제한, 무상공급 등을 규정 (안 제7조~제1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비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 간 : 2019. 03. . ~ 2019. 04. .(20일간)
 - 결 과 :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친환경 농·축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생산성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미생물”이란 광합성균,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클로렐라균, 복합균 등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미생물을 말한다.
2. “친환경미생물 생산”이란 친환경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3.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이하 “배양센터”라 한다)란 친환경미생물을 생산·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위치) 배양센터는 남원시 이백면 이백로 287-42에 둔다.

제4조(기능) 배양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친환경미생물 연구에 관한 사항
2. 배양센터 운영 및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 배양센터의 운영·관리 책임자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제6조(예산지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배양센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7조(생산 공급계획) 친환경미생물 생산은 수요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급계획에 따라 생산하여야 한다.

제8조(공급가격) 친환경미생물의 공급가격은 별표와 같다.

제9조(신청 및 공급) ① 친환경미생물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에게 유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 지역 외의 사람이 친환경미생물 공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사업내용 등을 판단하여 시장이 공급여부를 결정한다.

③ 친환경미생물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공급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급받는 사람이 친환경미생물을 판매하는 등 영리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시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운 경우
3. 제12조에 따른 신청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제11조(무상공급) ①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시의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의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대금납부) ① 친환경미생물을 신청하려는 자는 대금을 납부하고 수령 시 납부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절차는 「남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대장비치) 배양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춰 두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1. 친환경미생물 생산대장 (별지 제2호서식)
- 2. 친환경미생물 공급대장 (별지 제3호서식)
- 2. 친환경미생물 소모품 대장 (별지 제4호서식)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친환경미생물 공급 가격(제8조 관련)

구 분	균 종 류	단 위	수수료	비 고
시민 (제8조제1항)	단일균 (유산균, 효모균, 고초균, 광합성균, 클로렐라, 혼합등)	20ℓ	3,000원	
		5ℓ	1,000원	포장공급
		2ℓ	500원	포장공급
시 이외의 사람 (제8조제2항)	단일균 (유산균, 효모균, 고초균, 광합성균, 클로렐라, 혼합등)	20ℓ	15,000원	
		5ℓ	5,000원	포장공급
		2ℓ	2,500원	포장공급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친환경미생물 공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친환경미생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의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

① 제공받는 기관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② 이용 목적	▶ 친환경미생물의 원활한 공급 및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수집 및 관리 ▶ 친환경미생물 정보 제공을 위한 SMS 발송
③ 제공 항목	▶ 필수 기재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 선택 기재항목 : 영농규모, 주작목, 미생물용도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친환경미생물 공급 신청서 제출 해당년도 포함 5년
⑤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친환경미생물 공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에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 하지않음 <input type="checkbox"/>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① 제공받는 기관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② 이용 목적	▶ 친환경미생물 정보 제공을 위한 SMS 발송
③ 제공 항목	▶ 성명, 전화번호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친환경미생물 공급 신청서 제출 해당년도 포함 5년
⑤ 귀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친환경미생물 공급에 대한 정보 제공에 제한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에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 하지않음 <input type="checkbox"/>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장 귀하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p>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9년 월 일</p> <p>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p> <p>남원시장 귀하</p>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공고 제2019 - 529호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전 열람공고

남원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변경) 인가 전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같은법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 원 시 장

2019년 3월 15일

1. 사업의 종류 : 남원 도시계획시설사업(폐기물처리시설)
2. 사업의 명칭 및 시행지의 위치, 사업의 규모
 - 가. 명 칭 : 대산매립장 확장공사
 - 나. 사업의 위치 및 규모
 - 사업의 위치 : 남원시 대산면 대곡리 311일원
 - 면 적 : 128,981.3m²(변경없음)
 - 사업의 규모
 - 당 초 : 4단제방 증설 L=613m, H=5.0m
 - 변 경 : 매립장 수평증설(확장) 추가
매립면적 24,500m², 매립용량 228,500m³, 매립고 18m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남원시장(환경과)
 - 나. 주 소 :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붙임참조
5. 열람기간 : 시보게재 익일부터 14일간
6. 열람장소 : 남원시청 도시과(063-620-6452)
7. 관계 도서는 남원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붙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토지조서

구분	소재지 (대산면)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주소		소유자 성명		비 고
				지적 면적	편입면적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계	-	-	-	128,981.3	128,981.3	-	-	남원시	남원시	
1	대곡리	270	잡	2,148	2,148	-	-	남원시	남원시	
2	대곡리	294-1	잡	7,895	7,895	-	-	남원시	남원시	
3	대곡리	311	잡	55,882	55,882	-	-	남원시	남원시	
4	대곡리	925	잡	42,230.3	42,230.3	-	-	남원시	남원시	
5	대곡리	산28-3	임	7,547	7,547	전주시 중노송동	남원시 시청로 60	소**외 1인	남원시	
6	대곡리	산29-1	임	6,007	6,007	대곡리	남원시 시청로 60	나주** **중중	남원시	
7	대곡리	산30-5	임	489	489	대산면 대곡리	남원시 시청로 60	황**	남원시	
8	대곡리	산30-6	임	5,002	5,002	대산면 대곡리	남원시 시청로 60	황**	남원시	
9	대곡리	산37	임	1,781	1,781	-	-	남원시	남원시	

○ 지장물조서 : 해당없음

남원시 공고 제2019-550호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한 토지 출입의 공고

남원시에서 사업시행하고 있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사업』에 대하여 사업지구 내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조사를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에 대한 출입의 통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울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등의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 제2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9. 3. 15.

남 원 시 장

- 가. 사업의 명칭 :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사업
- 나. 출입대상 토지 : 전라북도 남원시 월락동, 고죽동 일원
(붙임내역 참조)
-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사업시행자 : 남원시장(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 보상수탁기관 : 한국감정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전문기관)
- 라. 출입조사기간 : 2019. 3. 14. ~ 사업완료시까지(일출 후 ~ 일몰 전)
- 마. 출입자 : 사업시행자, 설계업자 및 측량업자, 보상수탁기관(한국감정원) 및 케이에이비파트너스(주)(한국감정원 자회사: 현장조사업체), 감정평가업자, 기타 출입 증표를 소지한 당해 사업의 관계자 및 시공업자
- 바. 출입목적 : 사업시행을 위한 토지·물건의 조사, 감정평가 및 측량 등
- 사. 문의처 : 한국감정원 서남권보상사업단(062-372-1256)
남원시 기획실(063-620-6093, 6095)

출입하는 토지의 내역

■ 사업명 : 국립공원의료대학원 설립사업

연번	토지 소재지	지목	지적(m ²)	소유자(점유자) 성명	소유자(점유자) 주소	비고
1	전라북도 남원시 월락동 198-1	전	949	김차순	전라북도 남원시 요천로 1823(월락동)	
2	전라북도 남원시 월락동 198-2	전	985	김명연	전라북도 남원시 낙현안길 31-14(월락동)	
3	전라북도 남원시 월락동 198-3	대	940	청주한씨사문공파중종	전라북도 남원시 충청로 348(월락동)	
4	전라북도 남원시 월락동 198-5	대	527	청주한씨사문공파중종	전라북도 남원시 충청로 348(월락동)	
5	전라북도 남원시 월락동 198-6	대	2,334	청주한씨사문공파중종	전라북도 남원시 충청로 348(월락동)	
6	전라북도 남원시 월락동 198-7	임야	5	청주한씨사문공파중종	전라북도 남원시 충청로 348(월락동)	
7	전라북도 남원시 월락동 198-8	대	2,019	청주한씨사문공파중종	전라북도 남원시 충청로 348(월락동)	
8	전라북도 남원시 월락동 198-11	도로	40	남원시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9	전라북도 남원시 월락동 199-1	전	1,431	김차순	전라북도 남원시 요천로 1823(월락동)	
10	전라북도 남원시 월락동 199-2	전	1,607	최희경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견산2길 28, 가동 506호(경원아파트)	
11	전라북도 남원시 월락동 200	담	1,845	박태식	전라북도 남원시 고산길 61-54(고죽동)	
12	전라북도 남원시 월락동 201	담	1,524	김창용	전라북도 남원시 낙현안길 26(월락동)	
13	전라북도 남원시 월락동 202	전	1,799	이신동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황산로 1026	
14	전라북도 남원시 월락동 203	전	343	한동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평사로21길 30, 2동 503호(청량리동, 현대아파트)	
15	전라북도 남원시 월락동 204	전	1,388	이영훈	전라북도 남원시 월락동 401	
16	전라북도 남원시 월락동 205-1	전	826	박태식	전라북도 남원시 고산길 61-54(고죽동)	
17	전라북도 남원시 월락동 623	도로	609	국(건설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음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18	전라북도 남원시 월락동 산26	임야	11,503	청주한씨사문공파중종	전라북도 남원시 충청로 348(월락동)	
19	전라북도 남원시 월락동 산26-1	하천	199	남원시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20	전라북도 남원시 월락동 산27-2	임야	5,864	청주한씨사문공파중종	전라북도 남원시 충청로 348(월락동)	
21	전라북도 남원시 고죽동 162	전	280	임재호	전라북도 남원시 선박골길 9-42(고죽동)	
22	전라북도 남원시 고죽동 162-4	잡종지	1,842	백요셀	전라북도 남원시 황죽로 45(고죽동)	
				백도선	전라북도 남원시 황죽로 45(고죽동)	
				오해경	전라북도 남원시 황죽로 45(고죽동)	
23	전라북도 남원시 고죽동 162-5	대	1,917	유한회사대호	전라북도 남원시 충청로 358(고죽동)	
24	전라북도 남원시 고죽동 162-6	대	1,072	백요셀	전라북도 남원시 황죽로 45(고죽동)	
25	전라북도 남원시 고죽동 162-7	대	66	유한회사대호	전라북도 남원시 충청로 358(고죽동)	
26	전라북도 남원시 고죽동 163	대	191	유미라	전라북도 남원시 충청로 370(고죽동)	
27	전라북도 남원시 고죽동 164	대	261	유미라	전라북도 남원시 충청로 370(고죽동)	
28	전라북도 남원시 고죽동 641	도로	463	국(건설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음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내역은 사업시행자의 설계 계획 및 측량 결과에 따라 그 내용이 변동될 수 있음.